

공개토론회 자료

본 자료와 토론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은
2007. 3. 21(수) 朝刊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민간투자 분야 -

- 2007년 3월 20일(화) 14:00 ~16:00
- 기획예산처 MPB Hall (청사 별관 2층)

국가재정운용계획 민간투자분야 작업반

동 자료는 '07~'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민간투자분야 작업반에서 준비한
자료로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프 로 그 램

13:30 ~ 14:00 **등록 및 네트워킹**

14:00 ~ 16:00 **재정부담을 고려한 민간투자, 어디까지 가야 하나?**

사 회 : 김동건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발 표 : 김재형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토 론 : 공세일 (산업은행 프로젝트파이낸스실 실장)

신혜경 (중앙일보 논설위원)

왕세종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정책연구실장)

이성준 (건설교통부 민자사업팀장)

이창용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전찬환 (교육인적자원부 재정기획관)

정내삼 (기획예산처 민간투자기획관)

최석준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목 차

토론주제 : 재정부담을 고려한 민간투자, 어디까지 가야 하나?

I. 계획의 개요	1
1. 추진배경	1
2. 계획의 범위	1
3. 계획의 주요내용	2
II. 민간투자사업 추진방향	3
III. 민간투자 현황 및 투자규모 전망	4
1. 사회기반시설 전체 투자현황	4
【참고】 주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재정투자현황	5
2. 민간투자규모 전망	5
【참고】 2012~2016년 BTO 투자규모 추정	7
【참고】 2012~2016년 BTL 고시·집행 규모 전망	10
【참고】 2012~2016년 민간투자규모 전망	13
IV. 정부 재정부담 전망	14
V. 재정부담 관리방안	15
1. 재정부담 관리기준	15
2. 재정부담 관리방안	16

VI. BTL 사업 관리방안	19
1. BTL 대상사업 선정 검토강화	19
2. 민자적격성(VFM) 검토강화	19
3. 민투심 등 사업추진 관리 강화방안	19
<부록 1> 정부채정부담 관리기준(2% 룰) 설정 근거	20
<부록 2> 민간투자사업 개요	21
<부록 3> 민간투자 관계법령 연혁	23
<부록 4> 민자사업 대상시설	24
<부록 5> 수익형(BTO)과 임대형(BTL) 사업추진방식 비교	25
<부록 6> BTL사업 2007년도 한도액	26
민간투자 분야 작업반	27

토론주제

재정부담을 고려한 민간투자,
어디까지 가야 하나?

I. 계획의 개요

1. 추진배경

- 중장기 민간투자계획을 마련, 사회기반시설 적기 확충에 기여할 필요
 - 복지지출 확대 등 미래대비 투자소요는 증가하는 반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재원은 부족
- 중장기 민간투자 방향과 추진전략을 체계적으로 제시해 민자사업을 전략적으로 관리
 - 재정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등

2. 계획의 범위

- 분석의 시계를 향후 5년으로 설정
 - 계획기간 : 2007~2011년(5년)
 - 대상시설 : BTO, BTL방식을 포함한 모든 민간투자시설
 - * BTO : 도로, 철도, 항만, 환경, 물류 등 5개 부문 위주 분석
 - BTL : 학교, SOC, 환경, 문화·복지, 국방, 기타 등 6개 부문 위주 분석
 - 분석방법 : 국가기간교통망계획, 항만기본계획 등 중장기 분석자료를 기초로 추정

- 참여기관 : 민자사업 관련 부처,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등 관련 연구기관

3. 계획의 주요내용

□ 종합적·체계적인 민간투자 중·장기 계획의 수립

- 각 부문별 중장기 계획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연계한 **종합적 민간투자 정책방향 제시**

* 국가 기간교통망계획, 광역교통망계획, 항만기본계획 등과 연계

□ 적정 민간투자규모 산출 및 재정부담 추산

- 계획기간내 전체 사회기반시설 투자소요전망 및 적정 민간투자 규모 산출

- 민자사업 추진으로 예상되는 **정부재정부담규모 추산**

* BTO : 용지보상비, 건설보조금, 운영수입보장소요

BTL : 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

□ 연간 정부부담금 관리기준 설정

-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총 세출예산의 **2%**를 정부부담 관리기준으로 설정, 민자사업을 **안정적으로 관리**

* 영국의 경우 민자사업 추진으로 인한 정부재정부담이 전체 세출예산의 2% 수준에서 안정화

II. 민간투자사업 추진방향

- 국민생활의 편익증진과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지속 확충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재정투자 부족분을 민간투자자로 보완
 - 중장기적으로 민간투자대상시설 추가 확대 추진
예) 공공청사, 경찰청 전·의경 숙영시설 등
-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한 민자사업의 내실화
 - 재정절감 효과가 큰 사업, 시설운영에서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업 등을 우선 선정
 - 적격성 조사제도의 확대 등 엄격한 사업 타당성 검토
 - 자금재조달(refinancing) 등을 통해 운영수입보장제도의 지속적인 축소 유도
- 체계적·안정적 민자사업 관리로 투자 효율성 제고
 - 민간투자규모의 총량 예측과 조정으로 공공과 민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 실시
 - 재정부담능력에 맞는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민자사업 관리 추진

Ⅲ. 민간투자 현황 및 투자규모 전망

1. 사회기반시설 전체 투자현황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현황

- 재정투자의 17% 규모('06년 3.2조원)를 분담하는 수준으로 민간 투자 급성장

〈표 1〉 재정투자대비 민간투자비중

(단위: 조원)

	'98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 민간투자(A) ¹⁾	0.5	1.0	0.6	1.2	1.2	1.7	2.6	3.2
· SOC재정투자(B) ²⁾	12.7	15.2	16.0	16.0	18.4	17.4	18.3	18.4
· A/B(%)	3.9	6.6	3.4	7.5	6.6	9.8	14.2	17.4

주: 1) 연도별 실 집행금액 기준

2) “수송·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 기준, 『국가재정운용계획』

【참고】 주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재정투자현황

- 최근 10년간 도로, 철도, 항만 등 5개 분야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총 156.5조원의 투자 달성

〈표 2〉 최근 10년간 주요 사회기반시설 투자실적

(단위: 조원)

구 분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계
도 로	5.0	5.7	7.0	7.3	8.1	7.9	8.8	8.1	7.7	7.4	72.9
철 도	2.6	2.8	2.8	3.5	3.6	4.1	4.6	4.2	4.9	4.6	37.7
항 만	0.9	1.0	1.0	1.0	1.0	1.3	1.4	1.7	1.9	1.9	13.4
환 경	2.8	2.8	2.8	3.1	3.2	3.3	3.5	3.2	3.6	3.8	32.0
물 류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0.5
계	11.3	12.3	13.6	14.9	16.0	16.7	18.4	17.3	18.2	17.8	156.5

주: 1)5개 사회기반시설투자분야 실적 기준, 『국가재정운용계획』

2. 민간투자규모 전망

가. BTO 투자규모

◇ BTO 민간투자(집행기준)는 '09년 5.0조원 수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투자규모가 증가

- 계획기간('07~'11)동안 총 23.1조원, 연간 4~5조원 수준의 투자규모 유지 전망

〈표 3〉 연도별 BTO 민간투자계획(집행규모)

(단위: 조원)

구 분	'07	'08	'09	'10	'11	합 계
계	4.0	4.7	5.0	4.7	4.6	23.1

① 도 로

- 현재 추진중인 6개 사업¹⁾ (5.9조원), 계획중인 7개 사업²⁾ (2.6조원) 위주로 추진

1』 실시협약이 체결되어 추진중인 사업 : 서울 외곽, 서수원-평택, 서울-춘천, 인천대교, 용인-서울, 부산-울산

2』 고시완료후 협상중인 사업 : 평택~시흥, 안양~성남, 인천~김포, 상인~범물, 영천~상주, 제2영동, 수원~광명

② 철 도

- 현재 추진중인 6개 사업¹⁾ (4.8조원), 계획중인 3개 사업²⁾ (2.2조원) 위주로 투자

1』 실시협약이 체결되어 추진중인 사업 : 인천공항철도, 신분당선(강남~정자), 서울9호선(1단계 상부), 부산~김해경전철, 용인경전철, 의정부경전철

2』 고시완료 사업 : 광명경전철, 우이~신설 경전철, 도시철도 기본계획 반영사업 : 전주 경전철

③ 항 만

- 현재 추진중인 19개 사업(3.9조원), 계획중인 11개 사업¹⁾ (1.9조원) 위주로 투자

1』 평택당진항, 인천남항·남외항, 목포항, 울산신항, 부산신항·북항 등

○ 추진중인 사업의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08년부터 투자 규모는 점진적으로 증가

* 부산항 신항 1단계, 2-3단계, 2-4단계, 제2배후도로의 본격 추진

※ 항만 민자사업과 관련된 기본시설(배후도로·철도 등)을 포함한 재정투자도 지속적으로 증가 예상

* 2.0조원('07) → 2.2조원('11년)

④ 환 경

○ 현재 추진중인 31개 사업(0.2조원) 및 현재 계획중인 16개 사업(0.6조원)까지 추진, 이후 사업은 BTL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 검토

⑤ 물 류

○ 6개 사업(추진중 5개, 신규 1개), 총 0.9조원 규모의 투자 예상

【참고】 2012~2016년 BTO 투자규모 추정

◇ 2012~2016년 BTO 민간투자(집행규모)는 '15년 4.9조원 수준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투자규모가 지속 증가

○ '16년 이후 연평균 4.7조원 수준의 적정 투자규모 유지 전망

* '12~'16년간 투자규모는 23.5조원,

** 향후 10년간('07~'16년) 총 투자규모는 46.6조원 수준

〈표 4〉 '12~'16년 BTO 민간투자계획

구 분	'12	'13	'14	'15	'16	합 계
계	4.7	4.5	4.7	4.9	4.7	23.5

① 도 로

- 민간제안 접수후 미공고된 수도권 4개 고속도로와 대도시권 혼잡도로 및 지방도 정체구간 위주 추진 검토

* 4개 사업 : 서울~문산, 서울~동두천, 화도~양평, 광명~서울

- 수익성 있는 대규모 민자사업의 발굴은 제한적일 전망
- 반면, 그동안 민자사업 발굴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 신도시 노선을 중심으로 적극 발굴 예상

* 대도시권 혼잡도로, 지방도 정체구간, 신도시 접속도로 등

② 철 도

- 건설비·운영비가 저렴한 경전철·도시철도 위주로 추진
- 투자규모는 경전철 등의 증가로 인해 '07~'11년보다 다소 높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전망

- 중량전철은 대도시 광역교통난 해소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수익성 높은 노선에 한정하여 선별적으로 추진

* 신분당선('06~'10) : 판교 택지개발수요 반영

③ 항 만

- 계획중인 신규사업(16개, 5.9조원) 및 계속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연평균 0.9조원 수준 유지 전망

- 물류 허브화를 위한 부산-광양항 양항(two-port system) 및 인천, 평택, 당진항 등 중국 교역량 증가를 대비한 지속적 투자 실시

※ 재정투자는 기본시설(배후도로·철도 등) 건설과 고부가가치 물류허브 추진을 위한 신규 소요로 투자 증가세 예상

* 2.3조원('12) → 2.6조원('16년)

④ 환 경

- 동 기간중 환경시설 민간투자는 BTL 방식으로 추진 검토

⑤ 물 류

- 수도권 지역의 물류시설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남부 내륙화물기지 추진

나. BTL 투자규모

- ◇ BTL 민간투자규모(고시기준)는 '07년 9.9조원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여 '13년 이후 6조원 수준에서 안정화 전망
- BTL 실적행규모는 '11년 9.1조원 수준에 이르기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투자규모가 증가한 후 점차 축소될 전망
- ('07~'16) 총투자규모 : 73.5조원(고시기준), 69.9조원(집행기준)

<표 5> '07~'11년 BTL 민간투자계획(고시규모)

(단위: 조원)

구 분	'07	'08	'09	'10	'11	합 계
계	9.9	9.0	8.4	7.7	7.1	42.1

〈표 6〉 '07~'11년 BTL 민간투자계획(집행규모)

(단위: 조원)

구 분	'07	'08	'09	'10	'11	합 계
집 행	3.5	6.1	7.4	8.0	9.1	34.1

【참고】 2012~2016년 BTL 고시·집행 규모 전망

〈표 7〉 '12~'16년 BTL 민간투자계획(고시규모)

(단위: 조원)

구 분	'12	'13	'14	'15	'16	합 계
계	7.0	6.5	6.0	6.0	6.0	31.5

〈표 8〉 '12~'16년 BTL 민간투자계획(집행규모)

(단위: 조원)

구 분	'12	'13	'14	'15	'16	합 계
집 행	8.2	7.5	7.1	6.7	6.3	35.8

① 학교시설

- BTL 국립대 기숙사시설은 '07년까지 마무리하고, 중장기적으로 연구동 등 기타 대학시설 추진 검토

- 국립대기숙사 수용율(%) : ('06)12.1 → ('11)20.2

* 장기적으로 학생수 감축 등에 따라 30% 수준 도달 전망

- 울산지역의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 제공 및 우수인력양성을 위한 울산국립대를 BTL로 추진('07년)

- 초중등학교(지자체 자체사업)는 노후시설 개선과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 투자

- 초중등 노후교사비율(%) : ('06)16.9 → ('11)14.6

- * '05~'06년간 350여개 초중등학교 신개축 BTL 추진

② 수송 및 교통시설

- 장래 임대료 부담 및 철도분야 재정투자여건 등을 종합 감안 하여 BTL사업 추가 추진여부 검토

- 철도는 '06년 고시한 2개 노선(전라선 익산~신리, 경전선 함안~진주) 등 추진

- 도로, 항만 등 기타시설에 대해서는 VFM 창출가능성 등 민자 적격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추진여부 결정

③ 국방시설

- 노후·협소한 군인아파트 개선 및 사병 병영생활관 침대형 교체 사업 지속추진

- 군인아파트 개선율(%) : ('06)78 → ('11)97 → ('12)100

- 병영생활관 개선율(%) : ('06)46 → ('11)88 → ('12)100

- * 개선율은 2005년도 개선소요 산정기준

- 신속한 군 지휘·작전체계 구축을 위한 군 정보통신망 사업 조기 완공을 위해 BTL추진 ('07년)

- 기타 군시설 중 시급한 확충이 필요하고 민간의 참여가 가능한 신규 대상사업 발굴·추진

- 군 병원, 군 교육시설 등

-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개정필요

④ 환경부문

- 생활환경 개선 및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노후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지속추진
 - 하수관거보급률(%) : ('06)69 → ('11)79
- 기존에 BTO 등으로 추진하였으나 자체 수익성이 부족한 기타 환경처리시설을 BTL로 전환, 추진하는 방안 검토
 - 하수처리장, 자원회수시설(폐기물 처리시설 등) 등

⑤ 문화·복지시설

- 민간의 창의와 효율 발휘가 용이한 문화·복지시설은 점진적으로 투자를 확대
- 기추진중인 도서관, 공공보건의료시설 등은 투자를 지속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신규사업 발굴·추진
 - 도서관 : ('06)8만명당 1관 → ('11)5만명당 1관
 - 지방의료원 현대화율(%) : ('06)23.5 → ('11)61.8

⑥ 기 타

- 국민에게 긴요하고,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통해 VFM창출이 가능한 시설을 중심으로 신규 대상시설을 발굴, 추진
(예) 국제회의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청사 등
-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대한 민간투자 활용방안도 강구

다. 총 민간투자 예상규모(BTO+BTL) : 57.2조원

○ 계획기간중 총 57.2조원(연간 7~13조원) 수준의 민간투자 전망

▪ BTO : 23.1조원('07~'11년)

BTL : 34.1조원('07~'11년)

〈표 9〉 연도별 총민간투자규모(집행기준) 전망

(단위: 조원)

구 분	'07	'08	'09	'10	'11	합 계
BTO	4.0	4.7	5.0	4.7	4.6	23.1
BTL	3.5	6.1	7.4	8.0	9.1	34.1
합 계	7.5	10.8	12.4	12.7	13.7	57.2

【참고】 2012~2016년 민간투자규모 전망

(단위 : 조원)

구 분	'12	'13	'14	'15	'16	합 계
BTO	4.7	4.5	4.7	4.9	4.7	23.5
BTL	8.2	7.5	7.1	6.7	6.3	35.8
합 계	12.9	12.0	11.8	11.5	11.0	59.3

※ 향후 10년간('07~'16년) 총 민간투자규모 전망

▪ BTO : 46.6조원, BTL : 69.9조원

IV. 정부 재정부담 전망

□ '07~'11년 민자사업 총 재정부담규모 : 19.4조원

- 연간 3~4조원 규모로 '11년까지 지속적으로 정부재정부담규모는 증가할 전망

〈표 10〉 연도별 재정부담규모

(단위: 조원)

구 분	'07	'08	'09	'10	'11	합 계
BTO	3.5	3.8	3.4	3.2	3.1	16.9
BTL	0.04	0.1	0.2	0.8	1.3	2.5
계	3.5	3.9	3.6	4.0	4.4	19.4

* 참고로 동 금액은 추정치로서 민자시장 여건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V. 재정부담 관리방안

1. 재정부담 관리기준

□ 재정부담 관리방안 마련 필요성

- 계획적이지 못한 민자사업 추진은 정부재정악화 요인으로 작용
- 영국에서는 민자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정준칙을 마련

□ 외국의 민자사업 관리기준

- (영국) 법체계상 명문화 되어 있지 않으나 세출예산의 2% 범위 내에서 안정화

“The annual payments under PFI unitary charges make up a very small proportion under 2 percent - of departments’ total annual resource budgets(£ 6billion out of £ 304billion in 2005-2006)

(PFI : *strengthening long-term partnership*, HM TREASURY, 2006)

- (일본) 별도의 민자사업 관리기준은 없음.

⇒ 민자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부담이 세출예산의 2%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방안을 채택

- * 민간투자 선진국인 영국의 사례를 활용
(민자사업 추진으로 인한 안정된 재정부담관리 가능)

2. 재정부담 관리방안

가. 세출예산 산정기준 : 다음의 3가지 기준 고려 가능

① 총지출 규모

(1) 중앙정부 총지출규모 + (2) 지자체 일반회계 순계 + (3) 시도 교육비 특별회계

* 중앙 총지출 + 지자체 예산순계 + 시도교육비 특별회계규모

② 통합재정 규모

(1) 중앙정부 통합재정규모 + (2) 지자체 일반회계 순계 + (3) 시도 교육비 특별회계

* 중앙 통합재정 + 지자체 예산순계 + 시도교육비 특별회계규모

③ 예산순계 규모

(1) 중앙정부 예산순계 + (2) 지자체 일반회계 순계 + (3) 시도 교육비 특별회계

* 중앙 예산순계+지자체 예산순계 +시도교육비 특별회계규모

⇒ 예산순계 기준을 사용

- 민자사업에 투입되는 **재원부담이 대부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인** 점을 감안, 예산순계 기준(③)을 선택

나. 관리가능여부

⇒ 계획기간중 2% 범위에서 관리 전망

(단위: 조원)

구 분	'07년	'11년	'16년
▪ 총재정부담규모	3.5	4.4	7.9
▪ 예산순계 2% 수준	5.5	6.9	9.3

* 중앙정부 : 연평균증가율 : '06~'10 (6.4%), '11~'20 (5.8%), '21~'25 (4.3%) 반영

* 지자체 및 시도교육비 : '02~'05간 연평균 증가율 5.0%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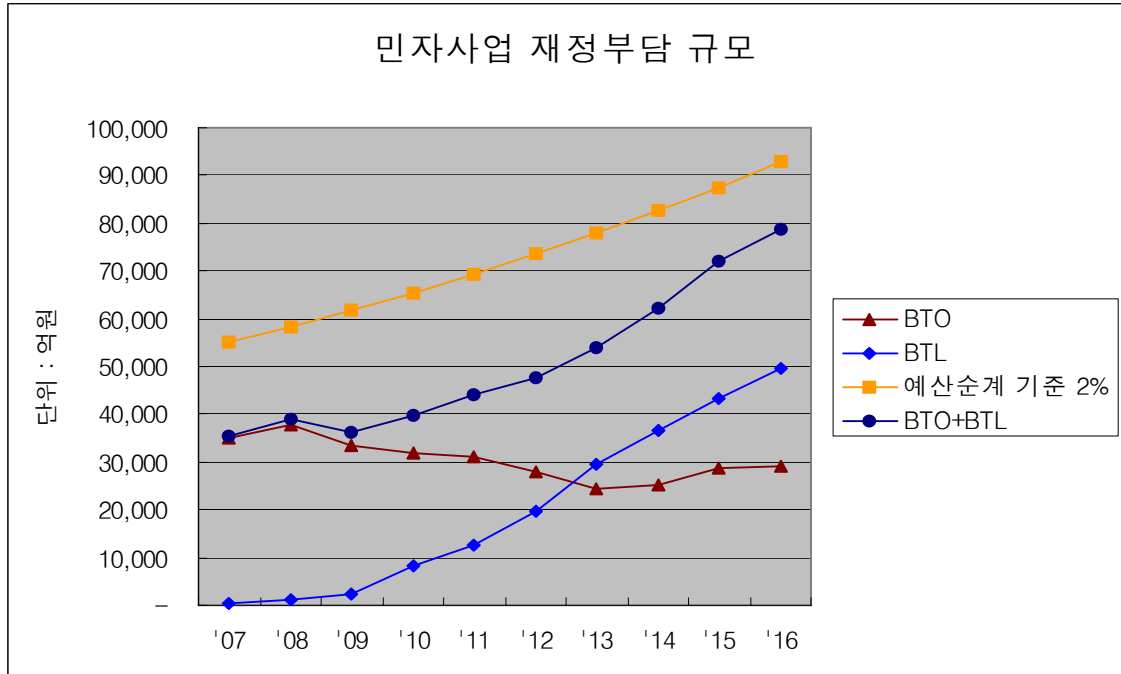
※ 참고로 BTL사업으로 인한 재정부담기간(평균 20년)을 감안, '25년까지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2%범위

* 2022년 기준 : 예산순계 대비 1.9%(11.7조원)

(단위: 조원)

구 분	'16년	'22년	'25년
▪ 총재정부담규모	7.9	11.7	13.0
▪ 예산순계(③) 2% 수준	9.3	12.3	14.0

<그림 1> 민자사업 재정부담 규모 및 추이('07~'16년)



VI. BTL 사업 관리방안

1. BTL 대상사업 선정 검토강화

- 예산요구 사업에 대해서도 BTL가능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선행
→ 전체사업(예산+BTL)의 우선순위를 동일선상에서 비교·선별
- BTL한도 수립시 사업의 타당성·시급성 및 준비상황 등 대상사업 선정기준을 보다 구체화하여 엄선
 - 사업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도 강화

2. 민자적격성(VFM) 검토강화

- 민자적격성 조사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검토결과를 PIMAC에서 재검증하는 등 절차 강화방안 검토
 - * 현재 민자적격성 조사기관에 대한 제한 없음
- 민자적격성 검토모델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보완 검토

3. 민투심 등 사업추진 관리 강화방안

- BTL사업에 대한 민투심 심의대상을 확대하는 등 관리 강화방안 검토
 - (현행) 고시 2천억원 이상, 협약체결 5천억원 이상 (토목사업을 전제)
 - (개선방향) 건축사업인 BTL사업의 경우 기준금액을 하향조정
- 민투심 심의대상이 아닌 사업도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기획예산처 실무협의를 의무화하는 방안 검토

부록 1

정부재정부담 관리기준(2% 룰) 설정 근거

□ 민자사업 선진국인 영국의 기준을 원용

- 민자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부담이 세출예산의 2%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도록 관리

“The annual payments under PFI unitary charges¹ make up a very small proportion under 2 percent - of departments’ total annual resource budgets²(£ 6billion out of £ 304billion in 2005-2006)

(PFI : *strengthening long-term partnership, HM TREASURY, 2006*)

1』 PFI Unitary Charge : 민자사업의 정부지급금

2』 departments’ total annual resource budgets : 부처별 전체 세출예산

□ 영국의 2% 룰 설정 이유

- 장래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최대한 정부재정의 유연성을 확보(**maximum flexibility**)할 수 있는 적정 수준

⇒ 정부세출예산의 2%

* Obviously, Government could have set the level at 3 or 4% but decided that **2% was the appropriate level.**

They represent **very little threat to the flexibility of Government budgets** and a **small commitment** of future revenue.

Government decided on **2%** for reasons of **maximum flexibility.**

- Partnership UK

부록 2	민간투자사업 개요
-------------	------------------

1. 민자사업 개념 및 사업시행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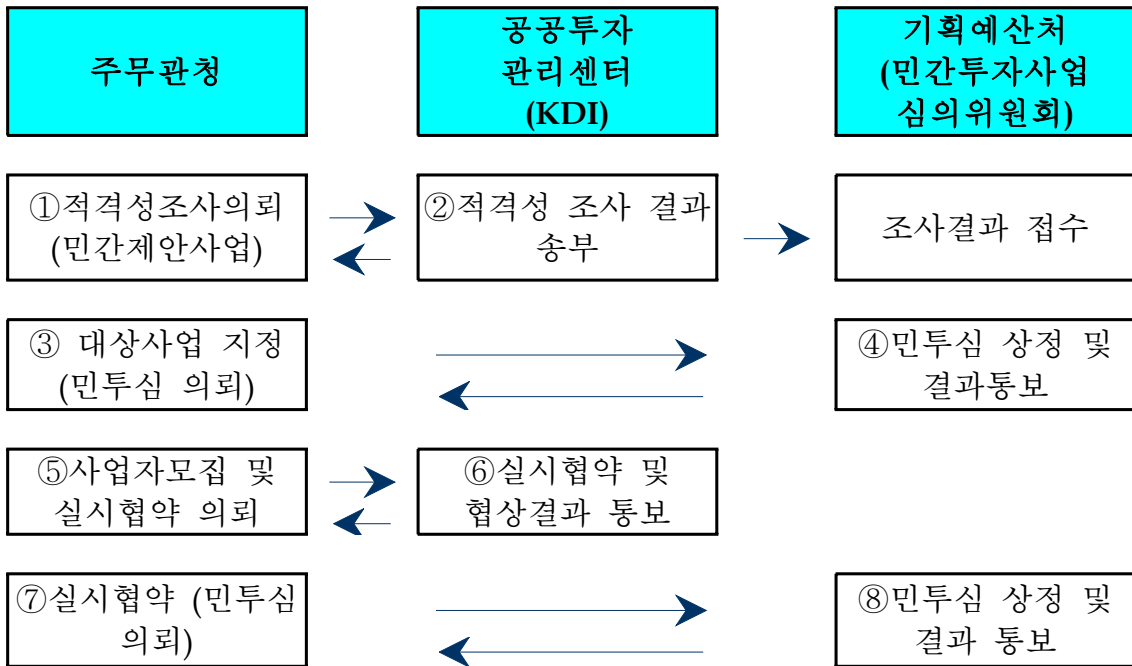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재원으로 건설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사업

⇒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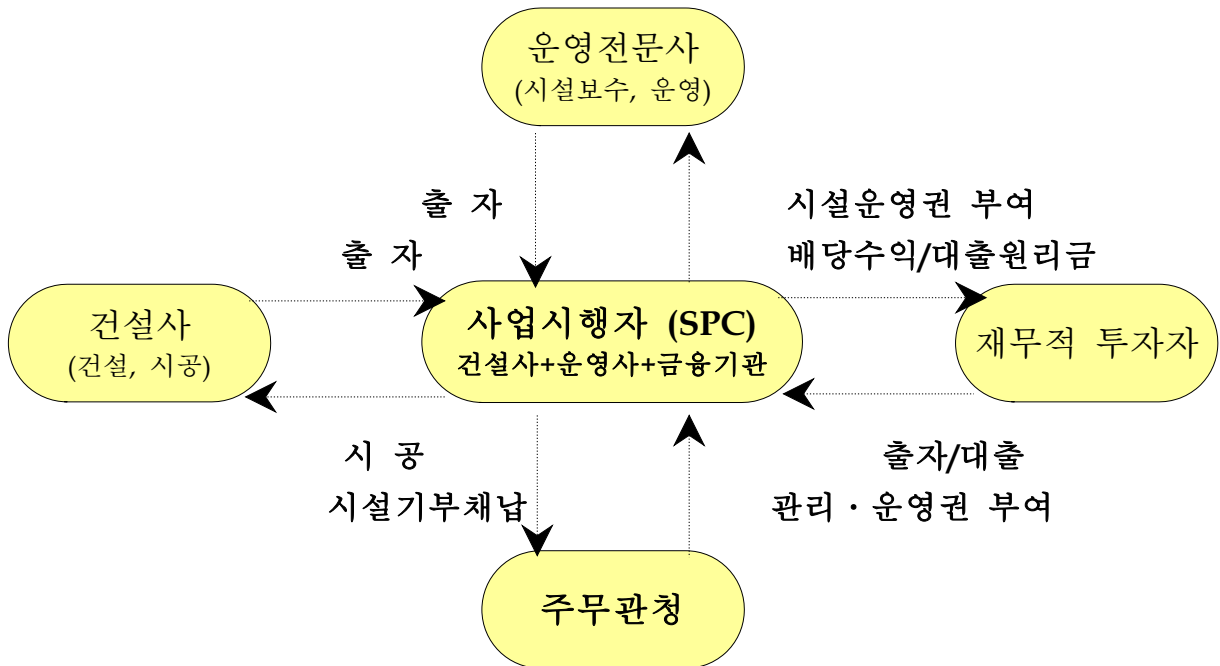
민자사업의 추진방식

유 형	소유권		사업시행자 권리설정	주요 대상시설
	준공시	운영기 간 종료후		
BTO 건설-양도-운영 (Build-Transfer-Operate)	주무관청	좌동	관리운영권	도로, 철도, 항만
BTL 건설-양도-임대 (Build-Transfer-Lease)	주무관청	좌동	관리운영권	학교, 박물관, 군인아파트
BOT (Build-Own-Transfer) 건설-소유·운영-양도	사업 시행자	주무관청	소유권	복합화물 터미널
BOO (Build-Own-Operate) 건설-소유-운영	사업 시행자	사업 시행자	소유권	복합화물 터미널

2. 민자사업 추진체계



<민간투자사업의 참여자>



부록 3

민간투자 관계법령 연혁

① '94.8 「민자유치촉진법」 제정

-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여 SOC시설의 조기확충, 공공사업에 민간의 창의·효율 활용 등을 위해 도입

② '99.4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전면 개정

- 사업추진방식의 다양화
 - 정부고시사업 : 주무관청이 고시하는 모든 방식
 - 민간제안사업 : BTO, BOT, BOO
-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타당성분석 의무화
 - 객관적이고 질 높은 타당성분석을 통해 대상사업 선정
- 사업자의 위험경감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최소운영수입보장 및 매수청구권 신설
 - 조기완공·민간효율에 의한 사업비 절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사회간접자본 투융자회사 설립근거 마련

③ '05.1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개정

-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방식 추가
- 대상시설 생활기반시설까지 확대(35→44개)
- 일반투자자들의 간접투자가 가능하도록 「공모방식의 인프라펀드」 설립이 활성화되도록 특례조항 규정
 - 투자한도(동일회사 주식의 10%) 배제, 차입금허용(자본금의 30%), 주식상장 의무화로 투자자금 환금성 확보 등

부록 4	민자사업 대상시설
-------------	------------------

분 야	2005년 이전 35개 시설 (주로 BTO 대상)	2005년 이후 9개 추가 (주로 BTL 대상)
도로(3)	도로 및 도로부속물, 노외주차장, 지능형 교통체계	
철도(3)	철도, 철도시설, 도시철도	
항만(2)	항만시설, 어항시설	
공항(1)	공항시설	
수자원(3)	다목적댐, 하천부속물, 수도	
정보통신(4)	전기통신설비, 정보통신망, 초고속정보통신망, 지리정보체계	
에너지(3)	전원설비, 가스공급시설, 집단에너지시설	
환경(5)	폐기물처리시설, 분뇨(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재활용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하수도	
유통(3)	유통단지, 화물터미널 및 창고, 여객자동차터미널	
문화관광(9)	관광지 및 관광단지, 청소년 수련시설, 생활체육시설, 도서관, 국제회의시설, 과학관, 도시공원, 박물관 및 미술관 (8개)	문화시설
교육(1)		학교시설
국방(1)		군주거시설
주택(1)		공공임대주택
보건복지(3)		아동보육시설, 노인주거·노인의료, 공공보건의료
산림(2)		자연휴양림, 수목원

부록 5

수익형(BTO)과 임대형(BTL) 사업추진방식 비교

추진 방식	수익형(BTO)	임대형(BTL)
시 설 성 격	· 최종이용자에게 사용료부과로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시설	· 최종이용자에게 사용료부과로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시설
대 상 시 설	· 고속도로, 항만, 경전철, 지하철, 환경시설 등	· 교육, 국방, 복지, 주택, 문화시설 등
투자비 회수	· 최종이용자의 사용료 (수익자 부담원칙)	· 정부의 시설임대료 (정부재정부담)
사업 리스크	· 높은 사업위험에 상응하는 높은 목표 수익률	· 낮은 사업위험에 상응하는 낮은 수익률
사용료 산정	· 총사업비 기준 (고시·협약체결시점 가격) · 기준사용료 산정 후, 물가변동분을 별도 반영	· 총민간투자비 기준 (시설의 준공시점 가격) · 임대료 산정 후, 균등분할하여 지급
재 정 지 원	· 건설기간 중 건설분담금 · 운영기간 중 운영수입보장 (정부고시사업에 한함) · 용지보상비 등	· - · - (필요시 재정지원 가능) · 토지 무상 제공 등
제 안 방 식	· 정부고시사업 · 민간제안사업	· 정부고시사업 · -

부록 6

BTL사업 2007년도 한도액

(단위: 억원)

대상시설	사업규모	총사업비 (추정)	사업 내역
<input type="checkbox"/> 국가사업		66,105	
① 군인아파트 및 독신자숙소	3,230세대, 870실	3,469	1사단, 25사단 등
② 사병내무반	육군 15대대, 해·공군 30동	1,924	1군단, 15비행단 등
③ 일반철도	2개노선 134km	51,977	원주~강릉(111km, 34,099억원) 소사~원시(23km, 17,878억원)
④ 국립대학교 시설	2개교	3,324	울산 국립대학교(2,500억원) 서울대기숙사(824억원)
⑤ 기능대학 시설	10개교	707	광주, 울산, 남인천, 화성, 춘천, 이산, 바이오, 구미, 김제, 전남
⑥ 군 정보통신망	광케이블 3,412km	2,595	1, 3군 전방지역
⑦ 재난 통합지휘무선통신망	178개 시군구	2,109	747개 기지국
<input type="checkbox"/> 국고보조 지자체사업		15,122	
⑧ 노후 하수관거 정비	1,539km	13,070	1개 광역시, 14개 시·군 (광주, 평택, 문경, 거창 등)
⑨ 생활체육시설	1개소	187	아산 실내체육관
⑩ 도서관	2개소	115	부산 다대, 화명 도서관
⑪ 복합 문화시설 ¹⁾	1개소	620	천안 종합문화예술회관
⑫ 노인의료복지시설	1개소	150	화순 노인전문요양병원
⑬ 공공보건의료시설	1개소	571	충주 의료원
⑭ 복합 노인복지시설 ¹⁾	1개소	182	순창 건강장수종합복지시설
⑮ 과학관	1개소	227	제천 한방과학관
<input type="checkbox"/> 예비사업 한도액 ²⁾		4,061	
<input type="checkbox"/> 지자체 자체사업 ³⁾		14,000	초중등학교 시설 등
합 계		99,288	

- 주: 1) 민간투자법상 대상시설중 2개 이상 시설을 함께 건설하는 경우
 2)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 지자체사업에 추가 사용될 수 있는 예비사업한도액
 3) 초중등학교 신·개축 사업 등으로 자체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동

민간투자 분야 작업반

반장	기 획 예 산 처	: 민간투자기획관
	한 국 개 발 연 구 원	: 김재형 공공투자관리센터장 박 현 연구위원
반원	기 획 예 산 처	: 민간투자제도팀장 : 민자사업관리팀장
	재 정 경 제 부	: 지역경제과장
	건 설 교 통 부	: 기반시설기획팀장 : 민자사업팀장
	해 양 수 산 부	: 민자계획과장
	교 육 인 적 자 원 부	: 시설기획담당관
	환 경 부	: 환경경제과장
	국 방 부	: 인력운영예산팀장
	문 화 관 광 부	: 문화정책팀장
	보 건 복 지 부	: 재정기획관실
	교육시설민간투자지원센터	: 유웅상 민자지원팀장
	문화관광정책연구원	: 김규원 민간투자관리팀장
	한 국 국 방 연 구 원	: 강한구 책임연구위원